2023-7호(7. 28.)

**입법정책담당관**

#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 차 례

## 【 입 법 분 야 】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1.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 1
2.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4

###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 행정자치위원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입법예고 ····· 11

#### □ 환경복지위원회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2.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13

#### □ 농산업경제위원회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5
2.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16

####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1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9

#### □ 교육위원회

1.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 23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3

# 차 례


##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 27

## Ⅳ. 법령 해석 사례

1.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37

2.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 42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49

2.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53

# 차 례

## 【 재 정 분 야 】


### Ⅵ. 재정 동향

1.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현대경제연구원) ····· 61
2.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 ····· 64
3. 최근 엔화 약세 원인과 전망(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71
4.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보건사회연구원) ····· 76
5. ChatGPT를 활용한 맞춤형 피드백의 실제와 과제(한국교육개발원) ····· 84

###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대중 투자'로 경북 농식품 투자 새지평 연다(경상북도) ····· 91
2. "일자리 최고의 노인복지" 경남도,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 개발비 ' 지원 확대(경상남도) ····· 93
3. 전국 최초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전라남도) ····· 95
4. 특별자치도 세수감소에 따른 초 긴축재정!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으로 헤쳐 나간다! (강원특별자치도) ····· 97
5. 전국 교육청 최초 교육정책 구매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발굴 본격화 (경기도교육청) ····· 99

###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재난대책비의 효율적 편성 방안 검토 필요(행정안전위) ····· 103
2.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필요 (국토교통위) ····· 107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환경노동위) ····· 111

###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천안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조정 관련 ····· 119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358 |
|---|---|

발의연월일: 2023. 5. 19.
발 의 자: 이금선·민경배·황경아·이병철
이재경·안경자·조원휘·이효성
박종선·정명국·김민숙 의원(11명)

### 1. 제안이유

가.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나. 이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대전광역시민은 가족돌봄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
4.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 의료 지원
3. 가족돌봄청년 휴식 지원
4. 가족돌봄청년 심리적·정서적 지원
5.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귀순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 9-369 |
|---|---|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19일

발 의 자: 이귀순 · 신수정 · 박희율
심철의 · 심창욱 · 정무창
서임석 의원 (7명)

## 1.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책무: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도·감독: 교육감은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 서류 확인 등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원의 중단: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시설 이용: 대안교육학생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안교육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게 학생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 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안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비
3. 그 밖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 · 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정]

###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

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7-10~2023-07-24)

### ◇ 제안이유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직·간접 이해관계인 집단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인 집단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개인 민원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이에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직·간접 이해관계인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추진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합의로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보장,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정책정보의 공개,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등을 하도록 함(안 제 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공공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무총리는 공공갈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공공기관에 소관 사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공갈등관리 종합시책,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에 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아.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공공갈등의 해결 지원 및 공공갈등의 효과적 조정을 위하여 공공갈등조정원을 설립하고, 공공갈등조정원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공공갈등을 조정하도록 함 (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 □ 환경복지위원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30호, 2023. 7.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력기준 중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산정할 때 대학 졸업 전의 근무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조은희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7-12~2023-07-26)

◇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사지표를 보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복지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됨.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같이 가정으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역시 소관 부처와 법률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립지원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 · 주거 · 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시 ·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및 그 보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립지원 및 개인별지원에 관한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자가 개인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자립지원의 내용 및 범위를 결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함(안 제18조 등).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 □ 농산업경제위원회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84호, 2023. 6. 20., 제정]

◇ **제정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 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 · 관리 · 제공 및 공동활용하고, 농업인 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함(제8조).

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 · 가공하여 농업인 · 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 · 확산 지원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제14조).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6-30~2023-07-14)

###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로 수만년 동안 사람과 살아오며 반려동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오늘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님.

이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6호, 2023. 7. 4., 일부개정]
[시행 2023. 7. 4] [교육부령 제306호, 2023. 7. 4, 일부개정]
[시행 2023. 7. 4] [국토교통부령 제1231호, 2023. 7. 4, 일부개정]
[시행 2023. 7. 4] [보건복지부령 제948호, 2023. 7. 4,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장소를 추가하고,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장소,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등으로 정하며, 해당 정보의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해당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다음 연도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협의회에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7-06~2023-07-15)

## ◇ 제안이유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 체계는 일, 주거,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주거지 중심의 생활양상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로 인한 직주복합적 경제활동 등 동시대 삶의 방식에 오히려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또한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한다)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을 공간혁신구역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 ◇ 주요내용

1.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상의 생활권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2.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

가. 도시혁신구역

1)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사목, 제5호의5 및 제40조의3 신설 등).

2) 도시혁신구역 내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3)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종 특례를 신설하고, 민간이 도시혁신계획을 제안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을 각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계획으로 의제하고, 제안자도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로 간주함(안 제83조의3 신설).

나. 복합용도구역

1)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아목, 제5호의6 및 제40조의4 신설 등).

2) 복합용도구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등과 건폐율, 용적률은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되, 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상한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3) 복합용도구역에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특례 적용(안 제83조의4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1)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함)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자목, 제26조제1항제5호, 제40조의5제1항 신설 등).

2)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량,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되,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3)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한 중복·입체적 결정의 근거(제3조, 제4조)를 법률에 명시(안 제43조제2항 등).

라.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 바목·제5호의2, 제26조제1항제4호,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삭제).

마. 공공시설등 설치의무 확대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에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도록 현행 제52조의2의 적용범위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확대(안 제52조의2).

3.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가. 규제완화 효과가 큰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안 제2조제5호의4신설).

나.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관되어 있거나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지정하려는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준용함(안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마.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되,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도시·군계획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고시한 날 해당 도시·군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봄(안 제35조의7 신설).

4. 기타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3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 □ 교육위원회

###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규정」

[시행 2023. 7. 7.] [대통령령 제33619호, 2023. 7.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회의의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서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며,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는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6-02~2023-06-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확인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국회도서관, 제226호, 김지현)

### □ 배경

○ 2023년 7월 1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을 마련 하고,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의 경우 상담센터 등을 통한 고위기 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개입 외에 보편적 개입도 중요하며, 대부분 청소년들의 일상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기반(school-based)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미국은 각 주(州) 법률 차원에서 학생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교과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나아가 교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당수 주(州)에서 자살 예방교육뿐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역시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미국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 관련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890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131호), 「학교보건법」(법률 제18640호)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17호)

## □ 도입

❍ 2023년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다. 2022년 중・고등학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그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2011년 이후에는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2 참조)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 국립보건통계센터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역시 10세~24세의 자살률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1년 10세~24세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었다. 청소년 위험행위 설문관련 CDC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고등학생의 42%가 2주 이상 매일 우울증세를 경험한 바 있고, 22%가 1년 내 심각하게 자살 시도를 고민하였으며, 10%가 1년 내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국 2021년 10월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아동청소년정신의학회, 어린이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미국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이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기반(school- based)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자살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2022년 「보편적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자살(예방)교육・ 인식법」을 제정하여, 6학년~12학년 학생 대상의 ‘근거기반(evidence-based) 교육’에 대하여 주(州) 및 학교기반 자살인식예방 교육 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BSCA)을 제정하여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보조금’ (School Based Mental Health Services Grants)에 관한 연방 지원을 규정하였다.

❍ 2022년 7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를 근거로 향후 5년 동안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취업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가 시범 보조금프로그램’ 및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각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경쟁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연방법률에 이어 실제적인 교육내용을 규정하는 각 주(州) 법률 차원에서는 뉴저지주 법률이 이미 2006년 학생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과목 내용에 포함시켜 의무화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테네시주가 「제이슨플랫법」(Jason Flatt법)을 제정하여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였다.

○ 나아가 2015년경 학교기반 자살예방교육에 있어서 점차 '근거기반'(evidence-based)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2018년부터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자살예방교육 뿐 아니라 정신건강인식 교육을 필수 교과 내용에 포함시켜 의무화하였고, 이어 교사 대상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그림 2 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율(2022)




※ 교육부·질병관리청 '제18차(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및 '2023 청소년통계'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각 주(州)의 학교기반 정신건강교육관련 입법례

### 1. 학생대상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 뉴저지주는 지난 2006년부터 공립학교인 초·중·고등학교의 필수 보건·체육 교과내용에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법률 제18a편 제18A:6-113조)

○ 로드아일랜드주는 공립학교 또는 주(州)에서 관리하는 모든 학교에서 1학년~12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보건·체육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규정하고, 2017년 입법을 통해 주(州) 초·중등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살예방교육을 보건교육 교과목에 통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자살예방"은 정신건강 인식 및 자살예방에 관한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적정 프로그램·실무·교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법률 제16편 제16-22-4조)

## 2. 학생대상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 2018년 뉴욕주에서 필수교과인 보건교육과목에 정신건강교육을 포함시킨 이후, 여러 주에서 학교기반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뉴욕주 교육법 제804조)

○ 루이지아나주는 2022년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공립학교 (Public school)의 운영당국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에 적합한 정신건강교육을 시행하도록하며, 이를 보건교육(health education)이나 기존 필수교과목에 통합하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법률 제17편 제 17:271.1조)

- 예방적 정신건강 방안(적절한 식이요법, 운동, 위험 회피, 스트레스 완화 등)
-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관계 및 차이점
- 뇌건강, 정서건강, 트라우마・스트레스의 인식 및 트라우마・스트레스가 정신건강・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서비스
- 스트레스 및 불안의 관리

○ 메인주 역시 2019년 입법을 통해 초・중등학교 필수 교과인 보건교육 내에 신체건강과 정신 건강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관련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20-a편 제4711조 및 제4712조)

## 3. 교사대상 자살예방 ·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 학교중심 자살예방교육에 있어서 미국은 학생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대상 교육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교사대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법률은 2007년에 자살 청소년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테네시주의 「2007년 제이슨 플랫법」(Jason Flatt Act of 2007)13)이다. 이 법률은 모든 교사가 매년 최소 2시간의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법률 제49편 제49-6-3004조) 「제이슨플랫법」은 지금까지 여러 주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입법되고 있다.

○ 최근에는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인식’(mental health awareness)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다.

- 플로리다주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인식·예방교육’을 의무화(법률 제XLVIII편 제1012.583조)하는 동시에, 주(州) 교육부가 교사 교육을 위하여 ‘근거기반 청소년 정신건강인식·지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XLVIII편 제1012.584조) 이 프로그램은 정서불안, 정신질환 및 약물사용 장애의 징후들을 교사들이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겪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교육구(school district)16) 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023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7월 1일까지 각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최소 80%가 이 프로그램을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주(州) 교육부에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정신질환 및 약물사용 장애에 대한 개요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stigma of mental illness)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
- 우울증, 불안, 정신이상, 섭식장애, 자해 등의 정서장애, 정신질환, 약물사용 장애의 잠재적 위험 요인 및 경고 징후, 일반 치료, 위험평가에 대한 정보
- 상황 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지식으로 ‘고위기 학생’(at-risk students)을 다루는 방법, 학생들을 식별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전문적 도움 및 기타 지원 전략(친구·사회, 자기돌봄 등)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일리노이주에서는 유치원~12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최소 2년에 한번 청소년기의 정신질환, 트라우마,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신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법과 연계 기술을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05장 제5/10-22.39조)

○ 노스다코타주는 교사 자격요건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역량을 요구한다. ‘교육기준·실무위원회’는 교사자격(면허) 후보자에 대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역량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5.1편 제15.1-13-35조)

### 4. 학생대상 정신건강검사 시행

○ 뉴저지주는 2021년 ‘학생 정신건강 관련 법률’19)을 입법하였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주 교육부는 학교보조금으로 정신건강 식별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해당 보조금을 받는 교육구는 7학년~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우울증 증세를 겪는 학생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매년 우울증 식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제18A:40-5.6조20)) 이 경우 해당 우울증 식별검사는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분야 전문가가 시행하거나 소아·청소년기 정신건강진단 전문의료기관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검사 당일 실시간으로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분야 전문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 5. 기타

○ 기타 각 주마다 다양한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기타 각 주의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원격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아이오와주는 공립학교 등 학교 내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원격의료(telehealth)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행동건강서비스(Behavioral health services)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I.C.A. § 280A.4)

**정신건강관리의 날**

코네티컷주는 유치원~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년당 2일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정서·심리를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의 날’(Mental health wellness days)을 규정하고 있다.(C.G.S.A. § 10-198f)



**16세 이상의 청소년 정신건강진료**

켄터키주에서 의사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청소년에게 외래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명시한다.(KRS § 214.185)

**학교심리사 고용지원**

델라웨어주는 교육구 내 학교 6학년~8학년 학생 700명당 1명 비율로 ‘학교심리사’ (school psychologists)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Del.C. § 1716F)

## □ 시사점

○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에 대하여 각 주(州)별로 구체적 입법조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의 장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미국의 최근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교기반의 학생대상 자살예방교육에 추가하여 정신건강교육 역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자살 원인은 정신적 문제(39.8%)가 가장 많았다. 학교기반의 학생대상 정신건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자살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더불어 교사대상 교육 범위를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에서 청소년 정신건강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 차원에서 해당 교육이 교사의 법정 의무교육임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사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교육의 내용은 학생대상 교육내용과 달리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교육대상인 동시에 교육 이수 후 학생의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를 식별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 그 외 우리의 학교기반 자살예방교육 역시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근거기반’을 요건으로 명시하도록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현행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보다 전문적인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는 것 역시 입법상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Ⅳ. 법령 해석 사례

# Ⅳ 법령 해석 사례

## 1.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3-0408, 2023. 6. 22.,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 · 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이하 "지역문화재단"이라 함)에 지방문화시설(각주: 지방 문화 · 예술의 진흥 및 지역 주민의 문화 · 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개별 법률에 그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결론이 “위탁할 수 있다” 임을 전제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문화시설(이하 “경기문화시설” 이라 함) 운영 업무를 경기도의 지역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도의 지역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 이라 함)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이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각주: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사무의 위임 ·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같은 법 제117조(각주: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2022) p.257 참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은 같은 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포함(각주: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및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29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되는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점, 같은 법 제1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박물관·공연장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같은 호 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예시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7 해석례 참조)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각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례 참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23. 5. 31. 회신 23-033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기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경기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5. 31. 회신 23-0331 해석례 참조)

아울러 「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 「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 2.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3-0377, 2023. 6. 27., 소방청]

### 【질의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등은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소(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하나로 “비상구”를 규정(같은 별표 제2호)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같은 조 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는지?(각주: 건축물 옥상이 지상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전제함.)

### 【회답】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이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한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피난층을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뜻하는바, 건축물의 옥상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도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난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상’도 아님이 분명하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은 같은 조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피난계단을

비롯한 “피난계단”은 같은 영 제34조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하므로 직통계단이 아닌 이상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피난계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르면 “옥외피난계단”은 집회장 등 일정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인 층의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으로서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의 경우, 해당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 피난계단 · 옥외피난계단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 사안의 계단을 통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므로 그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 또한 같은 호에 따른 비상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그 피난층 및 지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출입구까지 비상구로 인정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등 일정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도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각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비상구의 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한 '옥상'으로의 피난은 이와 같이 옥상으로도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상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1.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의견23-0231, 2023. 6. 2., 전라남도 강진군]

### 【질의요지】

가.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나.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각주: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 귀 군에서는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의 구체적인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주민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단체,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150, 2023. 6. 2., 전라남도]

### 【질의요지】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목)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가목)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가목),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목),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다목), 또는 그 밖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라목)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부모 언어”란 다문화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호) 및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사업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전라남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

살피건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의 취지가 같은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에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처우법에 따른 "재한외국인" 등의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내용의 조례가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각주: 법제처 2023. 3. 15. 의견제시 23-0074 참조 ) 해당 내용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정분야】

# Ⅵ. 재정 동향

# Ⅵ 재정동향

## 1.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기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

**–현대경제연구원(2023. 6.)–**

### □ 수정 전망 개요

○ 2023년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하락한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 미약,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반등의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였다.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 구 분 | 2021년 연간 | 2022년 | | | 2023년(E)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경제성장률 (%) | **4.3** | 3.0 | 2.3 | **2.6** | 0.9 | 1.5 | **1.2** |
| 민간소비 (%) | **3.6** | 4.0 | 4.2 | **4.1** | 3.0 | 1.3 | **2.2** |
| 건설투자 (%) | **-1.6** | -3.8 | -1.9 | **-2.8** | 0.6 | 0.3 | **0.5** |
| 설비투자 (%) | **9.3** | -7.0 | 5.5 | **-0.9** | 4.5 | -5.0 | **-0.3** |
| 수출증가율 (%) | **25.7** | 15.6 | -2.4 | **6.1** | -13.0 | 1.2 | **-6.1** |
| 소비자물가 (%) | **2.5** | 4.6 | 5.6 | **5.1** | 4.0 | 2.8 | **3.4** |
| 실업률 (%) | **3.7** | 3.3 | 2.5 | **2.9** | 3.1 | 2.8 | **3.0** |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 수정 전망 배경

#### (1)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착륙 이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경기는 현재로서는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 시장이 개선되면서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어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 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L' 자형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2) 내수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상존

2023년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 및 고물가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악화된 영향에 기인한다. 특히,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부담이 가중,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자심리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감소세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설비투자는 ICT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최근 설비투자가 증가(4월 전년동기비 4.4%)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부진 및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로 설비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3) 수출 경기 회복 지연

수입 감소세 확대에도 주력 품목 및 시장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는 등 하반기에도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반도체 및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하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연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서비스 수지 악화로 2022년 대비 흑자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사점

○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경기의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 2.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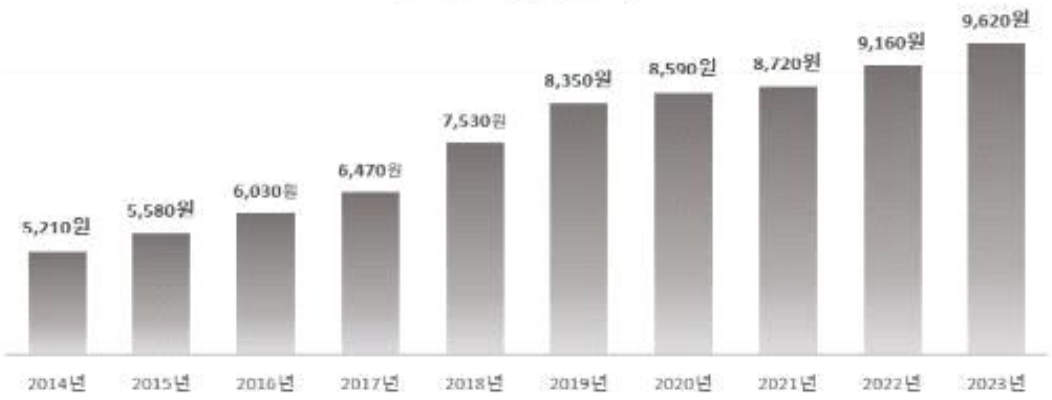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2023. 7.)-**

### □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 추이

○ 우리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 **(최저임금)** 매년 인상을 거듭하며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27.8% 상승하는 등 국제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가파른 상승세 시현 중

<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5개년 상승률은 35.2%로 OECD 조사대상국(32개) 가운데 6위*를 기록

  * 실질 최저시급 상승률 상위 5개국 : 러시아(68.3%), 멕시코(53.8%), 리투아니아(53.0%), 헝가리(35.9%), 스페인(35.8%)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또한 61.3%에 달해 OECD 조사대상국(31개) 가운데 7위*를 기록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위 6개국 : 콜롬비아(92.3), 코스타리카(81.5), 칠레(71.9), 튀르키예(70.6), 뉴질랜드(67.6), 포르투갈(66.2)

< OECD 주요국 최저임금 현황 비교 >

(단위 : 달러, %)

| 구 분 | 실질 최저시급 (2016년) | 실질 최저시급 (2021년) | 실질 최저시급 5개년 상승률 (순위)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 (순위) |
|---|---|---|---|---|
| **한 국** | **6.48** | **8.76** | **35.2** (6위) | **61.3** (7위) |
| 영 국 | 10.15 | 11.30 | 11.3 (18위) | 56.9 (10위) |
| 일 본 | 7.31 | 8.00 | 9.4 (19위) | 44.9 (26위) |
| 독 일 | 11.83 | 12.19 | 3.0 (26위) | 51.1 (18위) |
| 미 국 | 8.19 | 7.25 | -11.5 (32위) | 29.0 (31위) |

자료 : OECD Stat (2021년 최신 통계 기준)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함에 따라 현장 인력 운용상의 경직성 심화

- 2018년 3월 도입된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 재해재난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장 수요가 매년 급증하는 등 현장 인력 운용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 또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 중

< 주요국 근로시간제도 비교 >

| 국 가 | ❶법정근로시간 | ❷연장근로시간 |
|---|---|---|
| **한 국** |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 1주 12시간 |
| **미 국** | • 1주 40시간 | • 제한 없음 |
| **일 본** |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
| | • 월 45시간 / 연 360시간 → 1주 85시간까지 가능<br>• 노사합의 → 월 100시간 / 연 720시간까지 가능 | |
| **독 일** | • 1일 8시간 | |
| | • 6개월 또는 24주 동안 평균 1일 8시간 → 1일 10시간까지 가능 | |
| **영 국** | • 17주 동안 평균 1주 48시간 이내 ※ 근로자 동의 시 제한 없음 | |

- 최근 정부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다른 대안을 모색 중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살펴보고자 함

##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 관련 무역업계 설문조사 결과

○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용 여력이 낮아진 상황이며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2023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2024년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하지 말고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2022년(9,160원) 대비 2023년(9,620원)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비율은 33.1%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비율도 14.0%에 달함

  • 2023년 최저임금이 적정 이하라는 응답비율도 52.9%로 높았으나 동시에 2024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58.8%) 또는 인하(16.7%)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75.5%에 달함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함

  • 영향이 없다(34.0%)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 등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 제기

-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채용 축소 또느 폐지(41.2%)',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기존 인력 대체(28.8%)' 등 현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 임금인상 자제,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최소화(25.2%) 등 기존 직원들의 근무수준 또한 열악해지는 문제도 발생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별 대처방안 >




주 : 복수응답 가능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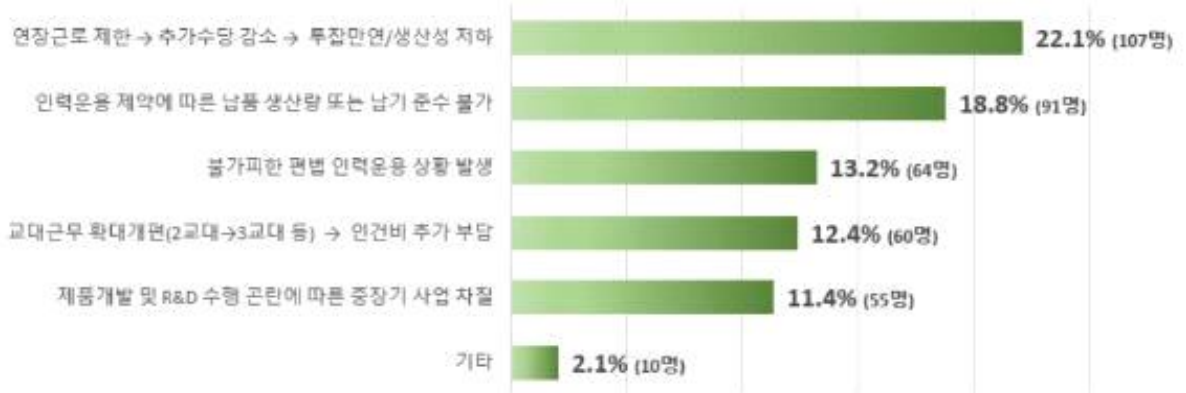
○ (근로시간) 현행 근로시간제(이하 주52시간제) 하에서 근로생산성이 저하되거나 납품생산량 및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응답인원의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고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1%에 달함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로는 '연장근로 제한→추가수당 감소→투잡만연 및 생산성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이 있음

  • 이외에도 '불가피한 편법 인력운용(13.2%)', '교대근무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12.4%)', 'R&D 등 중장기 사업 차질(11.4%)' 문제도 제기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유형>




주 : 복수응답 가능 문항

- 주52시간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안은 ‘월/분기/반기/연단위 등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유연화(42.1%)’로 나타남

  • 이외에도 ‘연장근로 상한 확대 또는 폐지(22.4%)’, ‘단위업무 대표관리자의 동의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허용(21.2%)’,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8시간) 재시행(19.5%)’ 등이 뒤를 이음

< 주52시간제 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




주 : 복수응답 가능 문항

## □ 정책 시사점

○ (최저임금)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이상 폭과 시기를 완만하게 조절해야 함

- 수출 중소기업 대다수는 2024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가능하다면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수용여력이 부족

  • 최저임금은 최근 5년 동안 27.8%(7,530원→9,620원) 상승하였으며, 물가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35.2%($6.48→$8.76) 상승하는 등 국제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최저임금의 인상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을 악화시키고, 현장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및 일자리 감소, 나아가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함

  • 이러한 상화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시급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269% 인상된 12,210원을, 경영계에서는 동결(9,620원)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은 낮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국적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음

  • (업종별)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인건비 부담이 어려운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꾸준희 제기되어 왔으나 낙인효과 등의 우려가 있으며 올해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도 최종 부결되었음

  • (국적별) ILO 개별 회원국으로서 고용과 직업 차별 협약(111호)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에 의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제약 발생

    *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업종 또는 국적에 따라 임금차등을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금액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적용 중

- 기업별·업종별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영향 등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

  •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이들의 업황, 경제상황 및 고용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는 지속 가능한 인상이 어려움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 개편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납품 생산량 및 납기 준수 불가 등의 문제가 지속발생 중이며 투잡 만연으로 생산성 악화마저 우려되고 있음

- 현행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 주52시간제가 첫 도입된 2018년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그만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방증

  • 특히 수출기업들의 경우 사무직·생산직 모두 해외 상황에 따른 업무 변동성이 큰 바 유연한 연장근로시간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 궁극적으로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노사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를 맡기는 방향이 바람직함

  • 상한 설정 자체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로시간 측정 및 현장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대폭 개정해갈 필요가 있음

## 3. 최근 엔화약세 원인과 전망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23. 6.)-**

### 1. 현황

□ 원/엔 환율은 8년만에 800원대를 기록하였고, 달러/엔 환율은 하락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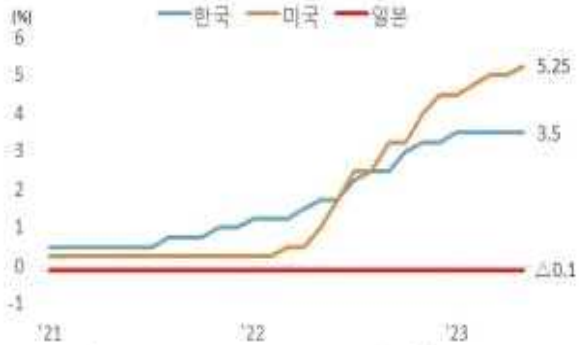
○ 지난 10년 엔화약세를 주도했던 구로다 日銀 총재가 교체('23.4월)되며 엔화가 일시적인 강세를 보였으나,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다시 약세 전환

□ (원인) 엇갈린 통화정책(긴축 vs 완화),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이 엔화약세를 견인

○ (통화정책) 주요국은 통화긴축으로 유동성을 흡수한 반면, 일본은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에 돈을 풀어 엔화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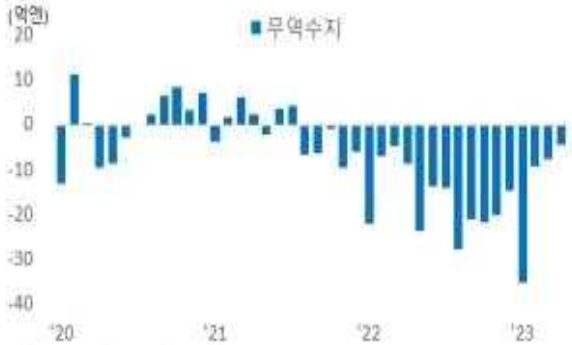
○ (무역수지)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에도 2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중

< 韓·美·日 기준금리 >




주 : 미국은 Federal funds rate 상단기준,
자료 : 한국은행, Fed, BOJ

< 일본 무역수지 >




자료 : 일본 재무성

### 2. 엔화가치 전망: 구조적 요인으로 엔화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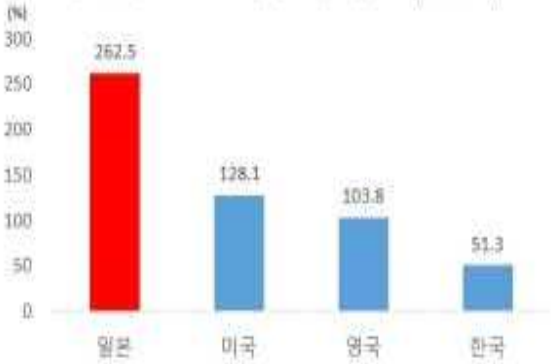
#### 1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

□ 국가부채 수준(GDP대비 262.5%)이 가장 높은 일본은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통화정책 전환에 부담으로 작용

○ 현재 일본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세수 감소, 고령사회 유지비(연금 보건비) 증대로 국가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日銀의 양적완화 정책 덕분에 일본정부 국채잔고는 2.7배 증가했으나, 정부 예산 중 국채 관련 비용은 오히려 감소(0.9배 수준)

<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21년) >




주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채(공기업 제외), 자료 : IMF

< 일본 국채잔고 및 국채발행 비용 >




자료 : 일본 재무성

○ 양적완화 종료로 국채이자가 상승한다면 국채費 급등이 예상됨(日재무성 추산)

□ 한편, 미국은 연내 1~2회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유럽 등 주변국도 긴축 기조가 이어지며 엇갈린 통화정책이 지속될 전망

## 2 구조적인 무역적자

□ 일본 수출입은 구조적 문제로 엔화약세가 무역수지 적자를 견인하는 구조

○ (수출) 자동차('22년 19.4%) 등 전통산업 수출 비중이 높고, 경쟁국 대비 ICT 등 첨단산업 수출 비중('21년 18.0%)이 낮아 新산업에서 수출 동력을 찾기 어려움

○ (수입) 동일본대지진('11년)이후 원전 가동중단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며 엔화약세 → 수입가격 상승 → 무역수지 적자 심화 → 엔화약세 악순환 발생

### 3 매각가능 해외자산 축소

□ 보유한 해외자산 청산을 통한 외화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움

○ (과거) 외국의 통화가치 상승(엔화약세) → 해외 자산 처분 → 엔화수요 확대 → 엔화강세 전환

○ (현재)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증권투자 비중이 줄며* 매각 가능한 해외자산이 축소된 상황

* 해외 증권투자는 자국 통화가 강세일 때 확대되고 약세일 때 자산 처분으로 환차익을 실현하는데, 아베노믹스 이후 장기간 엔화약세로 해외 증권투자 비중이 급격히 축소

- 한편, 경영참여나 영속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직접투자는 확대되는 양상

## 3. 원화가치 전망: 당분간 원화약세

### 1 주변국 대비 낮은 금리

□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이 없어 주변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

○ 우리나라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

- 실질 구매력 약화로 내수소비가 주춤하고, 중국 경기회복의 제한적 파급효과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며 국내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전망

○ 반면, 미국, 유럽 등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긴축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 한국과 미국은 이미 역대 최대폭으로 기준금리가 역전(△1.75%p, 상단 기준)되었고, 미국이 연내 금리를 50bp를 인상할 경우 △2.25%p까지 추가 확대될 가능

○ 한국과 유로존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역전(△0.25%p)되었고, 향후 금리차 역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국과의 금리차 >




주 : 미국은 Federal funds rate 상단기준, 자료 : 한국은행

### 2 일시적 무역적자

□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기 전까지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는 구조적 문제 보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라는 경기순환 요인에 기인

## 4. 원/엔 환율 전망 및 시사점

### 1 원/엔 환율 전망

□ 구조적 문제로 엔화약세는 지속되겠으나, 당분간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원/엔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음

○ ❶최근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반등한 점, ❷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엔화 자산(주식, 예금 등) 저가 매수 수요를 고려하면 소폭 상승할 가능성 상존

### 2 시사점

□ (자산 운용) 엔화 상품 이용 時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

○ (엔화 대출) 저금리 엔화 대출 이용 계획이 있다면, 원/엔 환율 상승 시 실 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필요

○ (엔화 예금) 최근 엔화약세로 엔화 예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엔화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 환전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

□ (국내 기업 영향) 엔화약세는 수출 기업 및 중간재 납품 업체에 부정적 영향

○ (對일본 수출입 기업)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수입) 기업은 환차손(환차익) 가능성이 있어 수출(수입) 대금 환전 시 의할 필요

○ (일본과 수출경합이 높은 수출기업) 최근 한일 양국의 수출 경합도*는 대체로 약화되었으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진 품목**은 부정적 영향 예상

＊ 수출 경합도(0~1)는 두 국가간 수출 유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출 경합도(0~1)는 두 국가간 수출 유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중간재 납품 기업) 일본은 중간재 수입 2위국*으로 엔화약세로 일본 중간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 중간재 수입국가 순위 : 중국 28.1%(1위), 일본 9.9%(2위) , 3위 미국 9.5%(3위)

## 4.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보건사회연구원(2023.7)-**

### □ 성별 연금 격차의 개념과 측정

○ 성별 연금 격차(gender pension gap)는 1990년대 이후 연속적으로 실시된 각국의 연금개혁이 남녀에게 얼마나 다른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Bettio, Tinios & Betti, 2013).

- 성별 연금 격차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65세 이상 또는 65~74세 남성 수급자 대비 여성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얼마나 낮은지를 비율로 측정한 것임.

  - 그 수치가 '100'이면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0'이 되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수준의 극단적 연금 격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함(식1)

$$\text{성별 연금 격차}=\left(1-\frac{\text{여성의 평균 연금소득}}{\text{남성의 평균 연금소득}}\right)\times 100 \quad \langle\text{식1}\rangle$$

- 성별 연금 격차를 측정할 때 포함하는 연금제도의 범위는 연구마다 상이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통계청(EUROSTAT)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통상 공·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한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최근에는 공적연금의 노령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직역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까지 모두 포함하기도 함(Lis & Bonthuis, 2019)

○ 성별 연금 격차는 서구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였으나(Ginn, 2003), 2013년 유럽연합(EU)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유럽 각국의 노후소득 영역에서 발생한 젠더 불균형의 결과를 수치화한 개념으로 성별 연금 격차에 주목하기 시작함(Samek, 2016)

- 전술한 개념을 중심으로 성별 연금 격차는 최근 들어 EU를 비롯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가 되었음

- 현재 EU는 관련 보고서에서 성별 연금 격차를 유발하는 고용 격차 요인(employment gaps)과 연금제도 요인(pension system compensation)을 각각 지수화한 '미래지향적 성별 연금 격차(the Forward-looking GPG Index)'를 발표하였음

• 한편 한국에는 성별 연금 격차를 공식적으로 측정, 공표하거나 관리하는 지표가 없는 상황임(김혜경,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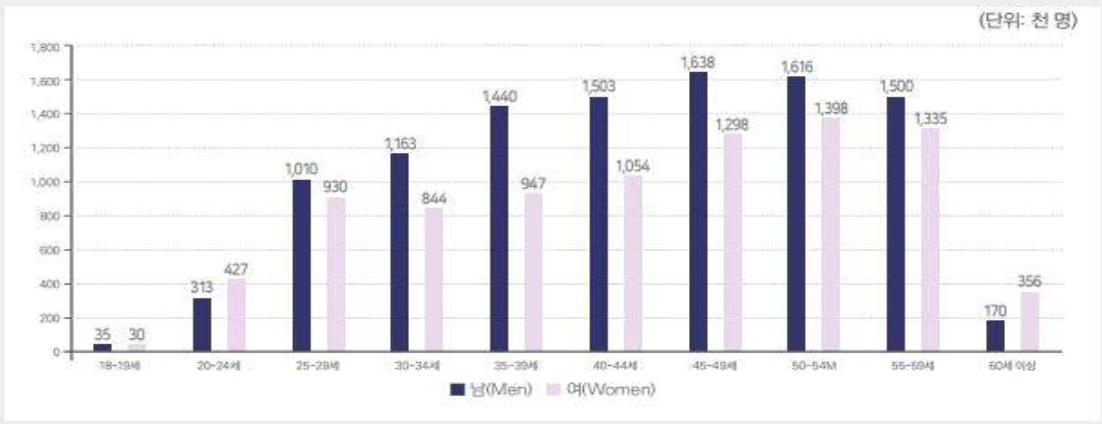
## □ 한국의 성별 연금 격차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나, 매년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입 기간과 수급자 규모에서 남녀 차이가 큼

○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많지만, 이후 남성 가입자 수가 많아져 35세에 접어들면 남녀 간 가입자 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함(국민연금공단, 2021)(그림 1)

• 특히 35~39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가입자 수가 남성보다 약 49.3만 여명 적은데, 이는 출산·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그림 1]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0년 12월 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a). 2020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33호). p. 6.

○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연령대의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특수직역연금 포함)을 전체 인구, (남성을 제외한) 여성 인구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면 남녀의 가입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이들의 비율은 63.6%로, 경제활동인구의 88.7%를 차지하며, 이를 여성 인구로 제한하면 그 비율이 각각 57.8%, 92.8%로 나타남(그림 2)

**[그림 2] 국내 공적연금 가입 실태(2020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및 여성)**

(단위: 천 명, %)

<table>
<tr><td></td><td colspan="6">18~59세 총인구 31,253천 명(15,396천 명)</td></tr>
<tr><td></td><td rowspan="3">비경제 활동인구 8,839천 명 (5,823천 명)</td><td colspan="5">경제활동인구 22,414천 명(9,573천 명)</td></tr>
<tr><td colspan="5">국민연금 가입자 21,580천 명(9,651천 명)</td></tr>
<tr><td colspan="3">지역가입자 6,898천 명(3,330천 명)</td><td rowspan="2">사업장가입자 14,320천 명 (6,013천 명)</td><td rowspan="2">임의가입자 362천 명 (308천 명)</td><td rowspan="3">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1,392천 명 (626천 명)</td></tr>
<tr><td>납부예외자 3,098천 명 (1,388천 명)</td><td colspan="2">소득신고자 3,800천 명 (1,942천 명)</td></tr>
<tr><td>총인구 대비 비율(%)</td><td>28.3 (37.8)</td><td>9.9 (9.0)</td><td>3.3</td><td colspan="2">55.8</td><td>4.5 (4.1)</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59.1(53.7)</td><td></td></tr>
<tr><td>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td><td>-</td><td>13.8(14.5)</td><td>4.6</td><td colspan="2">77.8</td><td>6.2 (6.5)</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82.5(86.3)</td><td></td></tr>
</table>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12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를 산출하고, 8월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산출하였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른 것임.
2)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합계가 경제활동인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률의 합계는 100을 초과할 수 있음.
3) 괄호 안의 수치는 여성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2020년 8월, 12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2021b).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239만 5천여 명, 여성은 181만 9천여 명이며,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은 각각 64.4%, 37.5%로 남녀 차이가 상당히 큼(통계청, 2022)

- 국민연금공단(2022)에 따르면 수급 유형별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노령연금 수급에서 50세 이상 남성은 319만 1,600여 명, 여성은 187만 7,700여 명으로 둘의 격차가 큼. 특히 여성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78만 5,200여 명으로 나타나 주로 파생적 수급권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점이 두드러짐(표 1)

〈표 1〉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

(단위: 천 명)

| 구분 | 전체 | | 노령연금 | | 장애연금 | | 유족연금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50~60세 미만 | 43.0 | 111.4 | 12.3 | 5.8 | 20.5 | 4.5 | 10.2 | 101.1 |
| 60~65세 미만 | 815.1 | 665.5 | 797.0 | 551.3 | 9.5 | 2.4 | 8.6 | 111.8 |
| 65~70세 미만 | 988.0 | 729.2 | 973.4 | 588.0 | 5.2 | 1.5 | 9.4 | 139.7 |
| 70~75세 미만 | 684.4 | 478.4 | 669.9 | 319.9 | 4.7 | 1.4 | 9.8 | 157.2 |
| 75~80세 미만 | 469.9 | 371.7 | 457.6 | 231.6 | 2.8 | 0.8 | 9.4 | 139.3 |
| 80세 이상 | 298.8 | 317.7 | 281.2 | 181.2 | 1.0 | 0.4 | 16.5 | 136.1 |
| 소계 | 3,299.2 | 2,674.0 | 3,191.6 | 1,877.7 | 43.6 | 11.1 | 63.9 | 785.2 |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2),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2022년 6월 기준).

-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 수를 비교하면 남성 72만 8,900여 명, 여성 12만 500여 명으로 장기 가입자는 남성이 훨씬 더 많은 반면,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 수는 남성 117만 7,700여 명, 여성 100만 6천여 명으로 격차가 크지 않음(표 2)

〈표 2〉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 가입 기간 20년 이상 | | 가입 기간 10~19년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50~60세 미만 | 367.1 | 80.0 | 255.5 | 366.6 |
| 60~65세 미만 | 268.4 | 32.0 | 481.0 | 440.2 |
| 65~70세 미만 | 93.3 | 8.5 | 337.7 | 177.2 |
| 70~75세 미만 | 0.1 | 0.0 | 103.5 | 22.0 |
| 75~80세 미만 | 0.0 | 0.0 | 0.0 | 0.0 |
| 80세 이상 | 0.0 | 0.0 | 0.0 | 0.0 |
| 소계 | 728.9 | 120.5 | 1,177.7 | 1,006.0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 2022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된 50대와 60대 초반에서는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이들이 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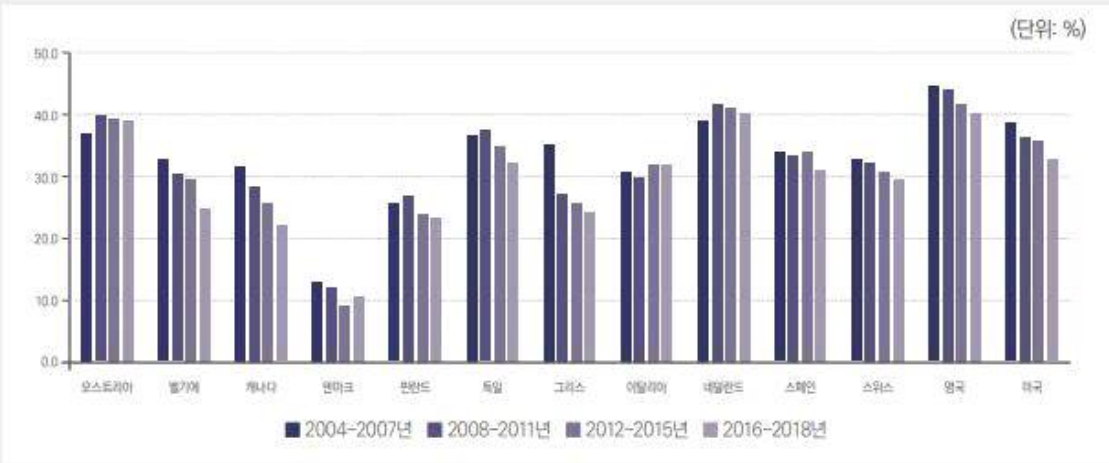
## □ 해외의 성별 연금 격차 추이

○ LIS(Luxembourg Income Study) 미시 자료(Wave Ⅲ~Wave )를 활용하여 해외 13개국의 성별 연금 격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기준, 성별 연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40.5%)이며, 뒤를 이어 네덜란드(39.8%), 오스트리아 (37.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연금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덴마크로, 매 시기 10% 안팎의 수준임
- 지난 20여 년간 성별 연금 격차 감소 정도가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로, 1990년대 초반 약 36%에 달하던 것이 2018년에는 21.7%로 14%p 가까이 감소하였음.
  - 캐나다는 보편적 기초연금(OAS)과 부조식 보충연금(GIS)을 통해 남녀의 연금 격차를 크게 낮춘 국가임.
- 한편 그리스는 성별 연금 격차가 2007년만 하더라도 35.2%로 높았으나 이후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강도 높은 연금개혁의 결과,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고액 수급자의 급여가 즉각적으로 삭감되면서 성별 연금 격차가 크게 낮아진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2000년대 중반 이후 성별 연금 격차 추이**




주: 공·사적연금 합산액 기준.

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에서 추출하여 저자 작성.

○ 아울러, 여성이 얼마만큼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적연금 수급률을 살펴본 결과, 거주 기반 (준)보편적 기초연금 혹은 기여-급여 연계가 약한 정액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대체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는 65세 이상 여성의 약 99%가 공적연금을 수급함. 이는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의 모든 여성 노인이 수급권을 확보하였음을 보여 주는 결과임.
- 독일을 제외한 대륙유럽과 남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남유럽에서 그 수준이 대단히 낮게 나타남.
  -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그 비율이 70%대 초반에 그치는데,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70%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 이력과 강하게 연계된 소득비례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재분배 기능이 부재한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저조한 것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 기간과 관련이 깊음.
  - 독일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이 5년에 그쳐 여성이 크레디트 적용만으로도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처럼 성별 연금 격차와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비교하면,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별 연금 격차가 작은 것은 아니며, 전체 노후소득에서 재분배 기능이 약한 연금제도의 비중이 높을수록 성별 연금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예로, 네덜란드는 거주 기반 기초연금을 통해 거의 모든 여성이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려 온 결과, 준의무적(quasi-mandatory) 기업연금에서 높은 수준의 성별 연금 격차가 발생함

## □ 정책 제언

○ 첫째, 노후소득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 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

- 성별 연금 격차는 불평등의 또 다른 차원 중 하나로, 연금제도를 통해 재생산되는 성별 격차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음.
- 한국은 주로 국민연금 남녀 가입률과 수급률을 통해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격차를 포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표로서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둘째, 한국에서는 여전히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급여를 확보하는 여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성별 연금 격차의 개선은 개별적 수급권 확보 및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함.

-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크레디트 확대가 시급하며, 최소 가입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성별 연금 격차를 줄인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5. ChatGPT를 활용한 맞춤형 피드백의 실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2023. 7.)-**

### □ 개요

○ 교육혁신을 위한 AI의 교육적 활용 범위 확대

- 다양한 첨단 기술이 교육 분야에 도입됨에 따라 교육 대전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올해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교육부, 2023)

- AI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핵심 기술임. AI는 기존의 표준화된 획일적 교육에 혁신을 불러와 교육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되고 있음(Miao et al., 2021)

○ ChatGPT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중 하나인 Chat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고도화된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이러한 기술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Baidoo-Anu & Owusu 2023)

- 이에 ChatGPT를 실제적 교육 맥락에 적용하고 그 효과와 제한점을 확인하여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 AI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맞춤형 피드백 설계 및 생성

○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개별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진도율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과 분위기의 피드백을 생성하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함.

○ 피드백 생성을 위해 1)학습자 특성(온라인 학습 진도율), 2)상황적 특성

(학기 초), 3)분위기(학습 격려)를 감안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합성을 높임

○ 맞춤형 피드백은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서면 통지표와 SMS 문자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됨.




[그림 1] ChatGPT를 활용한 맞춤형 피드백 생성 및 제공 절차

## □ 주요 연구 결과

○ 맞춤형 피드백 적용

- 경기도 소재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5개반 113명을 대상으로 ChatGPT로 생성한 맞춤형 피드백을 4주 동안 제공함. 맞춤형 피드백은 서면 통지표와 SMS 문자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었는데, 서면 통지표는 격주 출석 수업일에 배부되었고(2회) SMS 문자는 주 1회 발송되어(4회), 총 6회의 피드백이 제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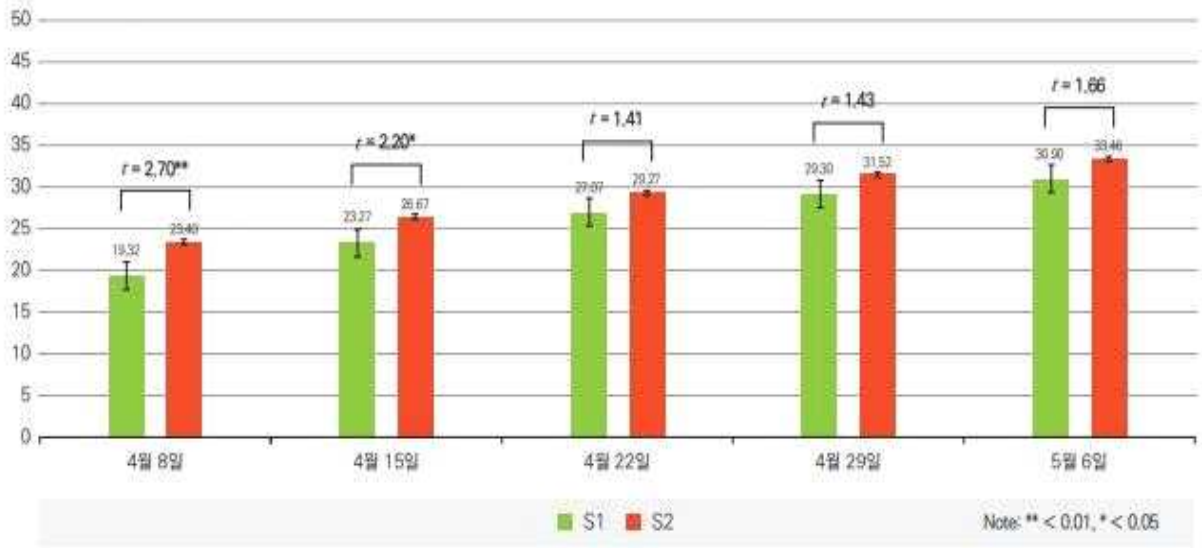
- 피드백은 제공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학습자의 진도율과 제공 시점이 고려되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생성되었으며, 한정윤 외(2022: 102-103)에서 제안된 맞춤형 피드백 설계전략에 따라 피드백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이모지(emoji)를 포함하도록 함

- 맞춤형 피드백 제공 후 온라인 학습 진도율의 양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LMS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맞춤형 피드백의 사용성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어서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심도 있게 확인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온라인 학습 진도율의 양적 변화

- 맞춤형 피드백이 제공된 4주의 기간 동안 피드백을 제공받은 2학년 학생들(S1)과 나머지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S2)의 주차별 평균 진도율을 비교해보면 [그림 3]과 같음. 맞춤형 피드백 제공 전(4월 8일)에는 이들 간에 유의미한 진도율 차이가 있었으나, 피드백 제공 2주차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는 맞춤형 피드백이 온라인 학습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함




[그림 3] 주차별 평균 진도율 변화의 추이

○ 맞춤형 피드백의 사용성

- 설문조사(4-Point Likert Scale, n=78)를 통해 파악한 학습자의 맞춤형 피드백 사용성은 <표 1>과 같음. 모든 조사 요인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용성이 확인됨.

- 이는 ChatGPT가 개별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이러한 피드백의 내용이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함. 또한 학습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서술이 실재감을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학습자에게 높은 사용의도를 이끌어냈음을 시사함

〈표 1〉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사용성 평가

| 요인 | M(SD) | 문항수(α) | 참고 문헌 |
|---|---|---|---|
| 정확성, 명확성 | 3.12(2.33) | 4(0.914) | 김미량(2002), 이은원·이수정(2004) |
| 유용성 | 3.24(2.04) | 4(0.90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 임정훈·임병노·성은모(2014) |
| 신뢰성 | 3.28(2.01) | 4(0.887) | 진굉위·이정(2021) |
| 실재감 | 3.07(2.40) | 4(0.866) | 민윤정(2020), 임동수·이순구(2022), 조지영(2014) |
| 사용의도 | 3.03(2.49) | 4(0.886) | 최미애(2011), 허희진·김우빈(2022) |

○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학생 10명, 교사 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학생 FGI를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분과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과 같은 실재감을 느꼈다고 응답함. 이는 피드백에 자신의 이름과 구체적인 학습 상황이 언급되어 있고, 내용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학생들은 피드백에 의해 자신이 세운 학습 계획을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도록 자극받았다고 응답함. 이는 ChatGPT 활용으로 온라인 학습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1주일 간격으로 빈번히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매주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기대감에 따른 반응으로 파악됨.

-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피드백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교사와의 새로운 상호작용이 유발되었다고 응답함.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로 교사가 서면 통지표를 배부할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교사가 통지표에 작성된 내용을 학생에게 간략히 언급하고 학생들이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교사와의 거리감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함

- 교사 FGI를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교사는 개별 맞춤형 피드백 작성을 위해 ChatGPT를 활용한 것은 편리하며, 교수 학습과 관련된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이러한 피드백 생성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천하지 못했던 개별 피드백 작성과 배부가 가능해 질 것이라 응답함

- 학생과 유사하게 교사 또한 맞춤형 피드백이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인식함. 이는 격주 출석 수업에서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여건에서, 맞춤형 피드백으로 인해 개별 학생과 일대일 상호작용을 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덕분이라 응답함.

- 마지막으로 교사는 ChatGPT 기반 피드백이 다른 방송통신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모두 유사한 학사 운영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일정 관리나 중요한 학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ChatGPT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 □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ChatGPT를 활용한 맞춤형 피드백 생성 및 적용의 가능성과 교육적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음. 113명의 학습자를 위한 113개의 피드백을 생성해 총 6회에 걸쳐 제공한 결과 학습참여도의 양적 향상이 확인되었으며,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학생과 교사 모두

에게서 확인하였음.

- ❍ 이러한 가능성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GPT4, Bard와 같이 더 적절하고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는 생성형 AI가 출시됨에 따라 더 나은 피드백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이미지, 소리 등 다양한 양식(modality)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기술을 함께 활용한다면 텍스트 위주의 피드백 생성을 넘어 보다 다양한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는 AI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음
- ❍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가진 한계 또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Chat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 AI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환각(hallucination)은 본 연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허구적 내용을 담은 피드백을 생성하기도 하였음.
- ❍ 아울러 교사의 입장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경감 등의 편리를 확보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교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생성된 피드백의 최종 검토 작업을 교사가 수행했던 것과 같이, 현 AI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교사 나름의 역할이 요구됨.
- ❍ 이에 ChatGPT와 같은 고도의 AI 기술을 교육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학습 맥락의 특성에 따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에 대한 사용성, 수용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 1. ‘대중 투자’로 경북 농식품 투자 새지평 연다!

–경상북도(2023. 7. 6.)–

- 농식품기업, 청년창업농 대상 농식품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설명회 개최
- 기존 지원체계 탈피, 민간자본을 통한 농식품 투자 활성화 박차

○ 경북도는 6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과 함께 도내 농식품기업, 청년창업농, 6차 산업 인증업체, 시군 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설명회를 개최했다.

○ ‘농식품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란 대중(Crowd) + 자금 모집(Funding)의 합성어로,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 경북도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융자 등 농업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하고 대중에게 직접 상품 및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아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 기존의 농업분야 지원체계를 확 바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농식품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 농금원의 “농식품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의 이해”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오그래(성주), 멍멍하누(안동), 로브콜(세종) 등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업체의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 사업설명회와는 별도로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희망업체와 전문 상담사 간

일 대 일 맞춤 지도를 통해 투자 참여 방법 및 전략 등 실제 투자(펀딩)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 경북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농식품기업 및 청년창업농들의 새로운 자금원 확보는 물론 농식품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경북도에서는 농금원과 함께 2020년부터 11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화 기금(펀드)인 ‘힘내라 경북! 농식품펀드’를 운용해 농산업분야 기업의 투자유치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해 7월에는 농금원의 투자상담센터인 ‘가온누리인베지움 센터’를 도청 신도시에 유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인구유출 가속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도내 농식품 경영체의 자립기반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식품기업, 청년창업농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2. “일자리가 최고의 노인복지” 경남도,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 확대

**-경상남도(2023. 7. 19.)-**

- 경남도, 올해 2회 추경서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1억 원 증액 편성
- 실버카페, 식당, 누룽지 사업단 등 초기 시설투자비 3~5천만 원 지원

○ 경상남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와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초기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버카페 등 9개소 시설투자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시장형 사업량 확대와 지원 수요가 급증하여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 이에 18일 창원시니어클럽에서는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10명의 어르신을 채용하고, 창원시 명곡도서관 내 실버카페를 개소했다.

○ 앞서 3월부터 웅상시니어클럽에서는 양산시 웅상출장소 내 실버카페를 개소한 바 있으며, 김해가야시니어클럽에서는 시청 앞 어르신 음식점 ‘콩시락’을 개소하여 콩나물국밥 등을 어르신의 손맛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노인인구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유입으로 안정된 고용과 적절한 급여를 전제로 한 괜찮은 일자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뉴시니어 사업개발비를 확대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남도는 뉴시니어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관공서, 도서관, 미술관, 은행 등에 실버카페 90여 개소 운영과 김구이, 참기름, 반찬가게 사업단, 빨래방, 공방, 음식점, 택배 사업 등 다양한 시장 경쟁력을 가진 매장형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 3. 전국 최초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전라남도(2023. 7. 6.)–

### - 친환경농가 판로 확보·향우 애향심 고취 ‘일거양득’ 효과

○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도권 향우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판로 확보와 수도권 향우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향우 3천 명에게 사업비 15억 원으로 본인 부담금 25만 원을 포함한 1인당 연 5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전남도 자체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지가 전남인 향우다.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시군별 선착순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 사업 신청을 바라는 수도권 향우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출생지 확인이 가능한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출생지 시군의 친환경 농업과로 전자우편·팩스·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남도장터 온라인쇼핑몰(http://jnmall.kr)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유기농축수산물, 무농약농축수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월 4회, 1회당 3만 원 이상 구매할 수 있다.

○ 구매 금액 중 본인 부담금 50%를 결제하면 구매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각 가정에서 배송받을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수도권 향우는 고향을 생각하는 애향심과 함께 건강을 챙기고 농가에서는 판로를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도권 향우의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 4. 특별자치도 세수감소에 따른 초 긴축재정!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으로 헤쳐 나간다!

**-강원특별자치도(2023. 7. 13.)-**

- 활용 불가한 잔여지 등 적극 매각하여 민간이 활용토록 유도(경제성)
-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 확충 기대(10년간 1,200억 원 규모)

○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우려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천 3백 필지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선별적 매각 및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정밀조사 대상은 전년도 실시한 도로재산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 추정 재산 약 7천 3백 필지이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필지별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 그리고 점유자 탐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 미활용 도로재산 중 집단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규모인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에서 매입 시 토지가치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 무단점유 중인 재산은 현장조사 및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점유자 탐문 등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및 안내현수막 등을 통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도로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정밀조사 기간 내에 무단점유자가 해당부서(도로과, 033-249-3621)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매각 등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정밀조사를 통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2천 필지, 추정가액으로는 약 1,200억 원(연평균 100억 원)이며, 무단점유 재산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1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도가 관리중인 도로재산은 37,150필지로 이중, 사실상 도로로 활용이 불가한 잔여지 등 도로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국면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5. 전국 교육청 최초 교육정책 구매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 발굴 본격화
### -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통과

**–경기도교육청(2023. 6. 29.)–**

- 도민 의견, 교육콘텐츠를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
- 올해 하반기 통합플랫폼 구축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교육정책을 구매해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하는 정책구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가 28일 통과됐다.

○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창의적 의견, 고안, 학교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 등을 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제도다.

○ 제안자의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의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조례안의 통과로 하반기에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구매제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 조례 주요 내용은 ▲정책구매제의 목적 ▲교육정책 제안에 대한 조례 적용의 범위 ▲제안의 제출, 접수 및 통지에 대한 규정 ▲접수된 제안의 보완 ▲정책구매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 지급 등이다.

○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단편적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사장되거나 채택되지 못했던 제안,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에 대해 보완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채택하겠다”라며 “정책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정책 제안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 구매제 도입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1. 재난대책비의 효율적 편성 방안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 현황

○ 재난대책비는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고,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재난대책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 사업명 | 2021 결산 | 2022 | | 2023 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A) | 추경(B) | | B-A | (B-A)/A |
| 재난대책비 | 842,500 | 100,035 | 100,035 | 150,035 | 50,000 | 50.0 |

### □ 분석의견

○ **재난대책비는 그 성격상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출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한 재난지원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 재난대책비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 폭발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대책비를 지급하고, 피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다.
-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 3,500만원을 재난대책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2020년 이후 당해 연도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상황으로, 2020년도의 경우 당해 연도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360억원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500억원, 2022년도에는 1,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1,500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2020~2023년도 당해 연도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복구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안) |
|---|---|---|---|---|
| 전체 예산액 | 436,000 | 820,000 | 100,000 | 150,000 |
| 당해 연도 재난대책비[1)] | 36,000 | 50,000 | 100,000 | 150,000 |

주: 1)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재난대책비 4,000억원, 2021년도의 경우 전년도 수해피해 복구비 7,700억원을 제외한 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재난대책비를 통해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복구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 다만, 재난대책비의 경우 그 성격상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난대책비의 본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즉, 재난대책비의 경우 사전에 그 소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는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해당 연도의 재난피해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였을 때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2020년도의 경우 집중호우·태풍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에 총 7,253억원이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되었으나, 2021년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700억원만 지출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대책비의 본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여 500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것은 태풍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9월 7일이었다
- 이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와 유사한 속도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과 동시에, 신속한 재난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 확대가 아닌 재난복구계획의 신속한 수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대한 재난대책비 교부 경과]

| 구분 | 주요내용 |
|---|---|
| 2022.9.6. | 태풍 힌남노 한반도 통과 |
| 2022.9.7. | 예비비(500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2022.9.16. | 재난대책비 중 일부(185억원) 선교부 |
| ~2022.10. | 재난복구계획 확정 및 재난대책비 교부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난대책비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산 및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시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당초 누적적립액 | 상반기 지출액 | 상반기 잔액 |
|---|---|---|---|---|
| 재난관리기금 | 광역자치단체 | 27,380 | 13,622 | 13,758 |
| | 기초자치단체 | 11,981 | 1,926 | 10,055 |
| | 소계 | 39,361 | 15,548 | 23,813 |
| 재해구호기금 | 광역자치단체 | 16,102 | 12,273 | 3,829 |

주: 2022.6.30.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사전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대책비의 특성상 본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난규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재난대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복구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 2.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 현황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은 주요도시, 항만 등을 연결하여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단위사업이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은 설계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건설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동 단위사업은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건설지원 사업과 건설비를 지원하는 건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건설사업은 길상-선원 등 준공사업 13건, 한림-생림 등 계속사업 48건, 밀양신법-동산 등 신규사업 4건, 총 6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단위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9억 6,300만원이 감액된 2,722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 2021 결산 | 2022 | | 2023 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A) | 추경(B) | | B-A | (B-A)/A |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 256,285 | 298,226 | 298,226 | 272,263 | △25,963 | △8.7 |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지원(1940-301) | 18,661 | 15,600 | 15,600 | 28,233 | 12,633 | 81.0 |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375-793) | 237,624 | 282,626 | 282,626 | 244,030 | △38,596 | △13.7 |

### □ 분석의견

○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많으므로,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 ① 우선 동 단위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은 실집행률 0%인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는 신규 세부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예산 편성 등을 위해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신규 공사 착공을 위한 지자체의 설계도서 검토 및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거나 설계완료가 예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엄격하게 사전검토하여 교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즉, 2023년도 예산안으로는 4개 세부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18~2022년간 신규 세부사업의 실집행현황]

(단위: 개, 백만원, %)

| 구 분 | 신규 세부사업 | 국 가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예산액(A) | 교부액(B) | 교부율(B/A) | 실집행액(C)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C/A) |
| 2018 | 3 | 600 | 600 | 100.0 | 0 | 600 | 0 | 0 |
| 2019 | 8 | 2,500 | 800 | 32.0 | 0 | 800 | 0 | 0 |
| 2020 | 4 | 1,000 | 1,000 | 100.0 | 0 | 1,000 | 0 | 0 |
| 2021 | 9 | 2,000 | 1,700 | 85.0 | 156 | 1,544 | - | 7.8 |
| 2022.8. | 8 | 1,600 | 1,464 | 91.5 | - | - | - | - |

자료: 국토교통부

- ② 그리고 2023년에 계속사업 48건, 준공사업 13건이 보조될 예정인데, 2021년 결산 현황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히 사전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 2021년도 결산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단위사업의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82.7%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내 전체 61개 세부사업 중 43개 세부 사업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이었고, 13개의 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 2021회계연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 중 실집행률 70% 미만인 43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지연) 8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한 지연 2건, 보상협의 지연 11건, 민원에 따른 지연 5건, 도로구역 결정 변경으로 인한 지연 4건, 민원에 따른 지연 1건, 시설물 이설 협의에 따른 지연 1건 및 지방자치단체·타부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실집행 실적 70% 미만 사업의 지연 유형]

| 구분 | 국가지원지방도 | |
|---|---|---|
| | 사업수 | 세부사업명 |
|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 | 8 | 경기광주-양평, 마령재터널, 밀양무안-신법, 부여임천-논산 강경, 성환-입장, 우성-이인, 운문-도계, 홍성은하장척-목현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 | 경기도계-인천마전, 화성장지-용인남사 |
| 보상협의 지연 | 11 | 도척-실촌, 실촌-만선, 갈천-가수, 길상-선원, 와부-화도, 도계-영월, 양주장흥-광적, 포천군내-내촌, 칠북-북면, 매리-양산, 산청-금서 |
| 민원에 따른 지연 | 5 | 대곡-반곡, 포진-문막, 상촌-황간, 연금-금성, 쌍백-봉수 |
| 도로구역 결정 변경 | 4 | 상원-청하, 광주건업-여주상품, 양근대교, 화성우정-향남 |
| 시설물 이설협의 | 1 | 봉강-무안 |
| 지자체/타부처 인허가 지연 | 3 | 가납-상수, 당진-서산, 대동-매리 |
| 기 타 | 9 | - |
| 합계 | 43 | - |
| 전체사업수 | 61 | - |

자료: 국토교통부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등에 대해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총사업비 협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세부사업 61건 중 43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처럼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과도하게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건설비 외에 용지보상비는 100%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보상비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교부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환경노동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 현 황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이동오염원(도로 및 비도로)의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예산안부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4334억 4,800만원 대비 370억 3,200만원(8.5%) 증액된 4,70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 2021 결산 | 2022 | | 2023 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A) | 추경(B) | | B-A | (B-A)/A |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 640,553 | 509,464 | 464,577 | 504,619 | 40,042 | 8.6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 617,357 | 478,198 | 433,448 | 470,480 | 37,032 | 8.5 |

### □ 분석의견

**○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예산상 계획 물량과 실제 수요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고 사업 참여유인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덤프, 펌프,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1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이 개정(2023.1.1.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조기폐차 등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바,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연저감장치(DPF)가 미장착된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2023년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 지원 현황(예시)]

(단위: 억원)

| 구 분 | | | 2022 (추경) | 2023 (예산안) | 지원 물량 |
|---|---|---|---|---|---|
| 노후경유차 | 조기폐차 | 소계 | 3,360 | 3,986.5 | |
| | | 5등급[1] | 3,360 | 2,000 | · 350,000대 → 250,000대 |
| | | 4등급 | - | 1,800 | · 90,000대('23년 신규) |
| | | 비도로용 건설기계 | - | 186.5 | · 10,000대('23년 신규) |
| | DPF 부착 | | 330 | 247.5 | · 20,000대 → 15,000대 |
| 건설기계 | 엔진교체 | | 443.5 | 396 | · 4,480대 → 4,000대 |
| | DPF | | 6.6 | 3.3 | · 100대 → 50대 |
| LPG 전환 | 화물차 | | 150 | 50[2] | · 15,000대 → 10,000대 |

주: 1)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펌프·믹서트럭)를 포함한 수치임
2) 화물차 LPG 전환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가 2022년 추경예산 기준 200만원에서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음

자료: 환경부

- 환경부가 제출한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22.7월)에 따르면, 전국 경유차 총 986만대 중 5등급 차량은 약 114만대, 4등급 차량은 약 116만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4~5등급 경유차 230만대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채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보험가입 기준)은 5등급 약 48만대, 4등급 약 84만대로 총 132만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4~5등급 경유차 상세현황]

(단위: 대)

| 등급 | 지역 | 합계 | 매연저감장치 등 장착 | 미장착 | | |
|---|---|---|---|---|---|---|
| | | | | 계 | 보험가입 | 보험미가입 |
| 4·5등급 합계 | | 2,300,406 | 673,421 | 1,626,985 | 1,315,642 | 311,343 |
| 5등급 | 계 | 1,140,167 | 363,488 | 776,679 | 479,894 | 296,785 |
| | 수도권 | 397,567 | 216,973 | 180,594 | 46,357 | 134,237 |
| | 수도권 外 | 742,600 | 146,515 | 596,085 | 433,537 | 162,548 |
| 4등급 | 계 | 1,160,239 | 309,933 | 850,306 | 835,748 | 14,558 |
| | 수도권 | 441,774 | 116,460 | 325,314 | 318,957 | 6,357 |
| | 수도권 外 | 718,465 | 193,473 | 524,992 | 516,791 | 8,201 |

자료: 환경부

-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가 5등급 경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나, 온실가스는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는바,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 4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기존에는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 등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노후 건설기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재편하였다.
-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등급 경유차 지원 물량은 9만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원 물량은 1만대 등 총 10만대를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및 2023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천원, 대)

| 구분 | 년도 | 지원 단가 (국비+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지원율 | 지원대수 |
|---|---|---|---|---|---|---|
| 5등급 경유차 | '22년 | 1,600 | 960 | 640 | 60% | 340,000 |
| | '23년 | 1,600 | 800 | 800 | 50% | 250,000 |
| **4등급 경유차** | '23년 | 4,000 | 2,000 | 2,000 | 50% | **90,000** |
| **비도로용 건설기계** | '23년 | 3,730 | 1,865 | 1,865 | 50% | **10,000** |

자료: 환경부

- 그러나 실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요청 대수는 64,210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참여요청 대수는 4,494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원 물량과는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2023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대, 천원, %)

| 구분 | |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1] |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 | | |
|---|---|---|---|---|---|---|
| | | | 신청대수 | 지원단가 | 전체예산 |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
| 4등급 경유차 | 총계 | 844,493 | **64,210** | 2,000 | 128,420,000 | 7.6 |
| | 수도권 | 323,846 | 32,200 | 2,000 | 64,400,000 | 9.9 |
| | 수도권 외 | 520,647 | 32,010 | 2,000 | 64,020,000 | 6.1 |
| 구분 | | 건설기계 ('04 이전) 운행대수 |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 | | |
| | | | 신청대수 | 지원단가 | 전체예산 |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
|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 총계 | 85,854 | **4,494** | 1,865 | 8,381,310 | 5.2 |
| | 수도권 | 24,965 | 2,420 | 1,865 | 4,513,300 | 9.7 |
| | 수도권 외 | 60,889 | 2,074 | 1,865 | 3,868,010 | 3.4 |

주: 1)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는 2022년 5월 기준
자료: 환경부

-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등에 근거하여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운행 제한을 비롯한 별도의 규제 조항이나 조기폐차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신청 또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이, 환경부는 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도록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 1. 천안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조정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6.)-

### □ 감사배경 및 목적

○ 감사원은 2022.10.25. 청구인(A 외 639명)으로부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통학구역 조정 대상이 된 ㉠동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2023학년도 ㉠동 일대 통학구역을 조정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학교배치 내용과 다르게 결정하는 등 통학구역 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배하였다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청구 요지**

■ (재정투자심사) 천안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통학구역 조정 대상이 된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임

■ (통학구역 조정) 천안교육지원청은 ㉠동 일대 통학구역 조정 시 근거리 배치 원칙을 위배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학교배치 내용과 다르게 결정하여 통학구역 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됨

■ (통학구역 설명회) 2023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설명회는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입주민에게 참석 안내를 하지 않고 의견 표현의 기회를 주지 않아 무효임

■ (학교신축 공사)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초등학교 및 통학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통학 시 안전 위험의 우려가 있음

###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서에 기재된 감사청구사항을 위주로 천안시 ㉠동 일대의 신설 학교 설립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대한 행정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 감사실시 과정

○ 감사원에서 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5.10.부터 같은 해 5.15.까지 4일간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실관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6 15.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

(단위:건)

| 구분 | 합계 | 주의 |
|---|---|---|
| 건수 | 1 | 1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천안교육지원청이 2019년 10월 수립한 신설 ㉮㉮초 설립계획서상의 ㉠동 일대 통학구역조정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초가 아닌 사업부지와 인접한 ㉰㉰초로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천안교육지원청은 2020년 2월 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는 위 아파트 입주민을 ㉰㉰초가 아닌 신설 ㉮㉮초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초래

○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과 관련하여 학교배치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의 통학구역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학교배치 사항을 통보함으로써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통학구역 관련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 한편 감사결과 일부 감사청구사항은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처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청구 요지와 종결처리 사유는 [별첨] “지적사항이 없는 감사청구사항 명세”와 같다.

[별첨]

## 지적사항이 없는 감사청구사항 명세

| 청구 요지 | 종결처리 사유 |
|---|---|
| **1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진행 과정 관련**<br>▪ 천안교육지원청이 개가초 신설을 위한 3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2019년 수시 3차, 2020년 정기 1차, 2차)의 재정투자심사 준비 과정에서 ㉠동 일대 통학구역 조정 대상이 된 기존 래라아파트의 입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한 것은 위법임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제3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등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라 한다)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br>- 그리고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2019년 2월)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br>-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br>▪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시 ㉠동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을 기존 학교인 내나초등학교에 배치하기 불가능해지자 2023년 3월 개교 목표로 개가초 신설을 추진<br>- 그리고 교육부 중투위 투자심사*를 위해 제출한 개가초 설립계획서에는 ㉠동 일대 내나초 및 개가초의 통학구역 조정(안) 포함<br>* (1차) 2019. 12. 20., (2차) 2020. 4. 24., (3차) 2020. 8. 31.<br>▪ 청구인은 중투위 투자심사 진행 과정에서 ㉠동 일대 통학구역 조정 대상이 된 래라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br>-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투자심사 관련 법령 및 지침에는 학교설립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br>▪ 그리고 2019년 및 2020년 등 3차례의 교육부 중투위 심사 시 제출된 개가초 설립계획서의 통학구역 조정(안)은 향후 학교 신설을 전제로 계획된 것으로 통학구역의 최종 결정은 아님<br>※ 천안교육지원청은 '22. 11. 30.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면서, ㉠동 일대의 경우 래라는 기존 내나초에서 신설 개가초로 통학구역을 변경하되 2027학년도까지 희망에 따라 내나초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학부모 의견을 수용하여 통학구역 특례사항을 두는 것으로 조정 |

| 청구 요지 | 종결처리 사유 |
| --- | --- |
| |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 관련 중투위 투자심사 진행 과정에서 통학구역 조정 대상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 **2 ㉠동 일대 통학구역 조정 관련**<br>▪ 천안교육지원청은 통학구역 조정 시 아래 사례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위배<br>- 천안교육지원청은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23학년도 ㉠동 일대 통학구역 조정 시 카카('25년 입주 예정)의 경우 가까운 내나초가 아니라 먼 거리의 신설 개가초로 배치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br>-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여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br>-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학교의 결정기준으로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천 5백 미터 이내로 하고<br>-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br>▪ 천안교육지원청은 2022. 11. 30.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시 ㉠동 일대의 경우 신규공동주택에 대해 통학구역을 지정하고 2023년 3월 개가초 개교에 따라 기존 내나초와 신설 개가초의 통학구역을 조정<br>- 천안교육지원청은 ㉠동 일대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면서 인근 학교와의 학급편제 및 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와 학교 수용규모, 통학거리 및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br>- 래라, 카카 등을 기존 통학구역인 내나초에 배치할 경우 적정규모의 학교운영 및 과밀학급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검토*<br>* 래라 입주 학생의 내나초 배치 시 공동주택 세대수: 내나초 6,123세대, 개가초 2,959세대<br>▪ 위와 같이 천안교육지원청이 기존 및 신설 학교의 학급편제와 공동주택의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공동주택이 원거리 학교로 배치되었다고 하여 이를 통학구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청구 요지 | 종결처리 사유 |
| --- | --- |
| **3 ㉠동 일대 통학구역 설명회 관련**<br>▪ 천안교육지원청이 2022. 10. 12. 개최한 ㉠동 일대의 2023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설명회는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입주민이 이해당사자인데도 참석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견 표현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br>- 위 설명회에 신설 개가초 교장이 참석하여 학교 홍보를 하려 한 것은 설명회 목적과 맞지 않는 위법임 | ▪ 천안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설명회는 2022. 10. 12. ㉠동 일대 통학구역 조정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최하여 학부모, 주민, 예비 학부모 등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br>- 또한 2022. 9. 28.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된 래라아파트의 학군 조정 요청에 관한 주민의견서에 개가초 등교를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어 개가초 교장 예정자가 이 건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하려 하였으나 참석자들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br>-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 설명회가 통학구역 결정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설명회 개최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 **4 개가초 건립 공사 지연 관련**<br>▪ 천안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2-㉡호)에 따르면 개가초 및 통학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예정일이 2022. 12. 31.에서 2023. 6. 30.로 변경된 것을 볼 때, 2023년 3월 개가초 개교 시 통학로 등 주변환경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고 학교 공사도 지연될 우려 | ▪ 개가초 및 통학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변경(2022. 12. 31.→2023. 6. 30.)된 것은 개가초 준공 이후 행정업무 처리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며<br>- 천안교육지원청은 개가초 통학로 및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안전펜스 등) 설치를 완료하고 당초 예정대로 학교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학교 공사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없이 2023. 3. 1. 개가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